#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00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 박성준·노종면·정을호

윤종군 • 한민수 • 백혜련

박 정・신영대・이재강

박홍배 • 이인영 • 이정헌

전혂희 · 민병덕 · 박희승

허 영·문진석·박홍근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 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 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

#### 법률 제 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	
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	
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	
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u>&lt;후단 신</u>	<u>이 경우 의장</u>
<u>설&gt;</u>	또는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할 수
	<u>있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6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	
달에 관한 규정을 <u>준용한다</u> .	<u>준용하되, 정</u>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